

# 工業所有權審判事例

国内事件

## 特許拒絕査定

<大法院 第2部 判決>(1985. 5. 28)

事件番號 : 83후 111

裁判長 : 신 정 철

關與法官 : 정 태 균 · 이 정 우 · 김 형 기

1. 審判請求人(上告人) : 뒈뽕가야구(株)(代表 : 사까노 츠네가즈)
2. 被審判請求人(被上告人) : 特許廳長
3. 原審決 : 特許廳 1983. 11. 29字, 1982年 抗告審判(絕) 第338號 審決
4. 主 文 : 上告를 棄却한다.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.
5. 理 由

審判請求人 訴訟代理人들의 上告理由를 判斷 한다.

原審決理由에 의하면 原審은 본건 特許出願第78-2038號(이하 本건 發明이라 한다)의 내용은 “스프레프트 마이세스 속에 속하는 브레오 마이신 생성균주를 영양원을 함유하는 배지에 접종하고 배양함에 있어서 N-(S)-1'-페닐에틸-1.3-디아미노] 프로판 또는 그염을 첨가해서 3-[(S)-1'-페닐에틸아니노] 프로필 아미노브레오 마이신을 선택적으로 제조하고 이어 배양된 혼합물로 부터 3-[(S)-1'-페닐에틸아미노] 프로필 아미노 브레오마이신을 분리 수거함을 특징으로 하는 3-[(S)-1'-페닐에틸아미노] 프로필 아미노 브레오마이신의 製造方法”임과 美國 特許公報 第3846400號(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)은 美合衆國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그 내용물이 본건 發明의 出願前 공지인데 그 내용은 “스트렙토 마이세스 바티실러스 속에 속하는 브레오 마이신 생성균주인 15003균주를 아미노·아미노·구아니딘·아미아노구룹의 화합물(본건 發明과 동일한 화합물을 11-12의 6행에 기재되어 있음)이 들어 있는 영양배지로 부터 배양하여 항생물질인 브레오 마이신을 製造하는 方法”임을 각 설시하고 “3-[(S)-1'-페닐에틸-1.3-디아미노]프로판”을 첨가한

영양배지로 부터 브레오 마이신 생성균주를 배양하여 3-[(S)-1'-페닐에틸 아미노] 프로필 아미노 브레오마이신을 생성시키는 본원 發明의 주요부와 인용발명을 대비한다음 양 發明의 제조공정이 동일하고 첨가되는 화합물이 광합이성체라는 미차가 있으나 이는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肺毒症의 부작용이 없는 것을 發見하고 원료물질을 S체의 아미노 화합물을 선택하였다는 것 밖에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첨가물을 대체하여 실시함에 있어서도 하등의 難易性이 개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는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發明된다고 인정되므로 特許法 第6條第2項의 규정에 해당되어 本願發明은 特許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判斷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와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美國等 외국에서 본원 發明이 特許登録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법제와 실정을 달리하는 우리나라에서도 特許登録이 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.

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패소자의 負擔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<免>